

교원 산업체연수 · 연구학기제에 관한 규정

전문제정 2015.09.01. 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2.04.12.
개정 2022.11.02. 개정 2023.06.26. 개정 2024.05.30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에 재직하는 전임 교원의 산업체 기술의 변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새로운 산업기술에 대한 교과과정 및 교안의 개발을 통한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, 아울러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체연수·연구학기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산업체연수 · 연구학기(이하 “연수학기”라 한다.)라 함은 강의와 학생지도의 책임이 면제 되고 연수 및 연구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하며, 국비와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한 파견연구도 연수학기에 포함한다.

제3조 (연수학기의 기간)

연수학기의 기간은 16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2022.11.02.>

제4조 (자격)

- ① 연수학기 해당자의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(이하 “교원” 이라 한다)으로 신규 임용된 후 1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24.05.30.>
- ② 연수학기 해당자는 당해 연도 이전 3년간 업적평가 결과의 평균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상기요건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04.12.>

제5조 (인원의 제한)

연수학기 해당자 총원은 해당학기별 전체교원의 10% 이내로 한다.

제6조 (신분)

연수학기 중인 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.

제7조 (처우)

- ① 연수학기 기간 중의 해당 급여는 현직 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.
- ② 연수학기는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

제8조 (절차)

연수학기를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11.02.>

1. 신청서(지정양식) 1부.

2. 계획서 1부.

제9조 (심사위원회)

- ① 연수학기를 신청한 교원의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되, 교원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.
-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11.02.>
 - 1. 연수학기 신청자의 적격 여부
 - 2. 연수 산업체와 전공 학과와의 연관성
 - 3. 연수학기 신청자의 적절한 안배
 - 4. 기타 연수학기에 관한 제반 사항

제10조 (의무)

- ① 연수학기 교원은 연수학기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.
- ② 연수학기 교원은 복귀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연수학기 교원은 연수 기간 중이라도 학기 당 담당 기준시수의 1/3이하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.<개정 2023.06.26>
- ④ 연수학기 교원은 복귀 후 연수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.
- ⑤ 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수학기 기간 중 수령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세부사항)
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5.09.01.)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 본 규정 시행 일자에 “교원 산업체연수 · 연구학기제에 관한 내규(제정 2012. 12.20.)”는 폐지한다.

부 칙(2016.01.05.)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6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11.0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6.2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5.30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

교원 연수학기 허가 신청서

신청인	성명		직위	
	소속			
	임용일자	년 월 일	생년월일	년 월 일
연수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연수학기 기간 중 수업 및 학생지도에 대한 의견				
<p>본 대학 산업체연수연구학기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계열(학과)장 : (서명)</p>				
<p>혜전대학교총장 귀하</p>				